

고용노동부 취업이름 국민취업지원제도



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(비용)을 지원

이 지원대상

1유형

- ▶ [요건심사형]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이하 & 재산 4억 이하, 취업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
- ▶ [선발형] 청년(18~34세) 중 중위소득 120%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이하

2유형

- ▶ [청년] 18~34세
- ▶ [선발형]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
- ▶ [특정계층*]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
*특정계층 : ①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북한이탈이주민 ③여성가장 ④결혼이민자 ⑤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⑥신용회복지원자 ⑦위기청소년 ⑧FTA피해실직자 ⑨건설일용근로자 ⑩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⑪미혼모(부)·한부모 ⑫영세자영업자 ⑬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⑭구직단념청년·보호종료아동 등

※ 2022년 기준 중위소득

(단위: 원)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	8인 가구
기준 중위소득 60%	1,166,887	1,956,051	2,516,821	3,072,648	3,614,709	4,144,202	4,668,355	5,192,508
기준 중위소득 100%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	7,780,592	8,654,180
기준 중위소득 120%	2,333,774	3,912,102	5,033,641	6,145,296	7,229,418	8,288,405	9,336,710	10,385,016

02 지원내용

- ▶ [취업지원서비스]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, 알선 등 제공
- ▶ [조기취업성공수당]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기준 2개월 이내 요건 충족한 취/창업시 50만원 1회 지급
- ▶ [취업성공수당]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 지급
- ▶ [소득지원]
 - 1유형 : 구직활동(월 2회)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X6개월)
 - 2유형 : 최대 수당 약 195만원(직업훈련 참여시)

03 신청방법

- ▶ [온라인]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 → 위탁기관 **퍼스트인잡(주)** 선택
- ▶ [오프라인] 인근 **퍼스트인잡(주)** 사무소 방문

*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있음



전국지점 문의상담

서울사무소) 02-6951-1248
 서울서부사무소) 02-6956-2338
 해운대사무소) 051-914-2488
 부산사무소) 051-714-2480
 원주사무소) 033-813-8088
 울산사무소) 052-708-2488

동래사무소) 051-711-2488
 거제사무소) 055-633-6226
 춘천사무소) 033-818-2486
 금정사무소) 051-923-2488
 김해사무소) 055-723-2488
 진주사무소) 055-795-2488